

표지면지
국민연금 분할연금 토론회

국민연금 분할연금 토론회 Program

●● 행사개요

- 일 시 : 2017년 02월 24일(금) 오후 14:00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 식 순

| 시 간 | 내 용 |
|-------------|--|
| 13:40~14:00 | 등록 |
| 14:00~14:05 | 사회 (국민의당 건복지 전문위원) |
| 14:05~14:10 | 개회사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
| 14:10~15:20 | 토론 좌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개선방안_유호선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토론1. 현소혜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2. 양소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토론3. 이정우 교수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4. 김현주 팀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 15:20~15:50 | 종합토론 |
| 15:50~15:55 | 폐회 |

●● 개회사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1

●● 축사

박지원 국민의당 당대표 3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5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7

●● 발제문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개선방안 9
유호선_국민연금연구원 박사

●● 토론문

국민연금 분할연금 토론문 41
현소혜_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연금 분할연금 토론문 71
양소영_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변호사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75
이정우_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 분할연금 토론문 81
김현주_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팀장

개회사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먼저 저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민연금의 합리적인 분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주제발표를 해주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님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님, 양소영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님,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보건복지부 김현주 국민연금정책과 팀장님, 바쁘신 중에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반한 연금분할제도는 대법원이 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1999년, 도입된 것만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20여년이 흐른 현재에는 어느 연금보다 잘 정착됨은 물론 형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한 더 발전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혼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절반씩 나누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 침해’라고 판결한 헌법 불일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더 나은 연금분할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는 연금분할제도의 개선 방향을 입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는 분할연금 효력이 상실되기에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분할연금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연금분할제도 개정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국민연금법」과 동일한 구조의 분할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법에 참고가 되는 중요한 기초 작업인 만큼, 여러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개정안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하는 오늘 이 자리가 국민연금분할제도 개정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귀중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축 사

박지원 국민의당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당대표 박지원입니다.

먼저, 오늘 김삼화 의원실에서 준비한 <국민연금을 합리적으로 분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박사님과 토론에 참여하시는 성균관대 한 소혜 교수님, 양소영 변호사님, 인제대 이정우 교수님, 보건복지부 김현주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은 분명히 시대를 앞서간 면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27년 앞서 국민연금제를 도입했던 일본도 2007년에서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분할연금이 여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분명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나누도록 한 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불일치를 결정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만, 이번 헌재 결정을 기회로, 보다 합리적인 분할연금제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의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빈곤률은 더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로 여

성들은 경제활동을 적게 하고, 두 번째로는 여성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급여는 남성 대비 15%가량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여성은 돈은 더 적게 벌어서 가진 돈은 적지만, 더 오랜 수명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원래의 취지인,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아이디어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딸들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1999년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고위직과 임금에 대해서는 엄연한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딸을 가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엄중하게 느낍니다.

김삼화 의원님께서 20대 국회에 시작부터 여성의 노후와 공적연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법을 바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도록 법 개정을 주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주어진 기회이긴 하지만, 위기를 기회삼아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무쫘록 이번 <국민연금을 합리적으로 분할하기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지금까지 운용해왔던 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바로잡고 새롭게 드러난 어려움들은 수용해, 보다 유익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승용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 이후 시의적절하게 '국민연금의 합리적인 분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삼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님 외 토론자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가 이혼할 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50:50으로 나눈 제도를 개선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담아 융통성 있게 법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할연금제도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더 큰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금 형성에 기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연금 수급 시기, 분할연금청구권의 포기 문제 등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삼화 의원님은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맡으며 여성과 가족의 권익 향상을 애써 오셨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의 합리적인 분할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의원님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분할연금제도 개정에 바로미터가 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들의 고견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조배숙입니다.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삼화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국민연금을 합리적으로 분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으신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박사님과 패널 여러분, 그리고 본 토론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9일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나누도록 한 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30일 이전까지 동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 분할연금 수령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4,598명이던 것이 2016년 11월 말 현재 1만9,433명으로 늘어나, 2010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혼이 증가하고, '실제 혼인기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분할연금 분쟁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양성평등이 완전하지 않은데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제활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분쟁이 발생 시 여성이 불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때마침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하신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합리적으로 분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토론회가 분할연금정책에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문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개선방안

유호선_국민연금연구원 박사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개선방안

유호선_국민연금연구원 박사

I. 서론

II. 분할연금의 의의 및 특징 그리고 관련 통계

1. 분할연금의 의의
2. 분할연금의 특징
3. 관련 통계

III. 분할연금의 문제점

1. 분할연금의 이중적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
2. 사후분할에 따른 문제
3.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규정의 문제
4. 분할연금 의무자 보호 규정

IV. 해외사례

1. 독일
2. 캐나다
3. 일본

V. 개선방안

1. 이중적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 개선방안
2. 사후분할에 따른 문제 개선방안
3.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규정의 문제 개선방안
4. 분할연금 의무자 보호 규정

I. 서론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1998년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도화된 이후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수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근본적 문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 분할연금의 개정
 - 2007년 개정 : 재혼 시에도 계속 수급, 본인의 노령연금과 함께 수급 가능 → **독립적 수급권 특성 강화**
 - 2015년 개정 : 분할비율 조정 가능, 신청구 가능 → **재산권 특성 강화**

- 또한 현재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에 위헌판결을 함으로써, 분할연금의 명확한 성격 규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의 위헌판결
 - 2016년 현재에 의한 위헌 판결(64조1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금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분할연금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고찰할 것임

II. 분할연금의 의의 및 특성 그리고 관련통계

1. 분할연금의 의의

- 사회보장적 측면
 - 부부간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소득활동과 비소득활동에 대하여 동등한 법적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다는데 있음(이정우, 2003)
 - 부연하면, 분할연금의 의의는 돌봄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다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법적 측면

- 분할연금은 재산분할 시 고려하는 세 가지 요소 중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제도임
-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독일 등은 이러한 부양적 요소를 중요 시 여겨 분할연금이 가장 견고하게 발전된 국가임

※ **재산분할 시 고려 사항**

- 청산적 요소 :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형성한 재산의 청산
- 위자료적 요소 : 이혼에 따른 손해의 배상
- 부양적 요소¹⁾ : 이혼 후의 생활에 곤란을 겪는 배우자의 부양

2. 분할연금의 특성 - 이중적 특성

○ 파생적 수급권 vs 독립적 수급권

- 파생적 수급권의 특성 : 분할연금은 이혼한 상대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발생
- 독립적 수급권의 특성 : 재혼으로 분할연금이 소멸되지 않으며, 분할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이 회복되지 않음
- ⇒ 독립적 수급권의 특성 강화 추세 : 독일 등은 이혼으로 연금 가입이력을 분할한 후, 분할 받은 연금 가입이력에 본인의 연금기여 이력을 추가하여 개인의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사회보장권의 특성 vs 재산권의 특성

- 사회보장권 : 강제가입 및 처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 (김영삼·전광석·김광수, 2000; 전광석, 2003)
- 재산권 :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획득과 처분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특성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

1) 그러나 이혼 후 부양은 기독교 전통의 국가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이혼에 의해 타인이 된 부부가 이혼 후에도 상호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풍토에 맞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이혼 후 부양개념은 부양권리자의 필요 부양상태와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 보호에 불충분함. 따라서 최근에는 이혼 후의 부양을 대신하는 새로운 '보상'개념이 제창되고 있기도 함 (堀勝洋, 2008)

3. 관련 통계

- 분할연금 수급자 수 : 11,491명 (2014.10)
- 분할연금 수급자 특성 (2014.10)
 - 여성 : 남성 = 88% : 12%
 - 분할연금 급여액 평균 : 165,990원
 - 수급자 중 약 34%는 10만원 미만의 급여 (급여액 증가 추세)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분포 : 5~10년 37% & 20년 이상은 약 8%
 -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 개월 수 : 1년 미만 77% & 1~5년 0.8% & 5~10년 10.4% & 10년 이상 11.5%
- 분할연금 의무자 수 : 11,738명 (2014.10)
 - 여성 : 남성 = 16% : 84%
 - 의무자 중 10만원 미만 급여 수급자 19% & 10~20만원 32% & 20~30만원 19.9% & 50만원 이상 8.4%

연금급여액 구간별 분할연금 수급자 수

(2014. 10월 당해연도 누계 기준, 단위 : 명, %)

| 당월지급월액 구간 | 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
| 10만원 미만 | 727 | (51.8) | 3,158 | (31.3) | 3,885 | (33.8) |
|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577 | (41.1) | 3,744 | (37.1) | 4,321 | (37.6) |
|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 78 | (5.6) | 1,797 | (17.8) | 1,875 | (16.3) |
|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 17 | (1.2) | 846 | (8.4) | 863 | (7.5) |
|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3 | (0.2) | 401 | (4.0) | 404 | (3.5) |
| 50만원 이상 | 2 | (0.1) | 141 | (1.4) | 143 | (1.3) |
| Total | 1,404 | (100.0) | 10,087 | (100.0) | 11,491 | (100.0) |

주) 사망 등의 사유로 2014.10월 지급이력이 없는 경우 최종월 당월지급월액 기준.

연금급여액 구간별 분할연금 의무자 수 (원노령연금 수급자수)

(2014. 10월 당해연도 누계 기준, 단위 : 명, %)

| 당월지급월액 구간 | 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
| 10만원 미만 | 1,921 | (19.5) | 358 | (18.8) | 2,279 | (19.4) |
|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2,974 | (30.2) | 809 | (42.5) | 3,783 | (32.2) |
|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 1,925 | (19.6) | 410 | (21.5) | 2,335 | (19.9) |
|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 1,233 | (12.6) | 178 | (9.3) | 1,411 | (12.0) |
|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867 | (8.8) | 89 | (4.7) | 956 | (8.1) |
|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474 | (4.8) | 36 | (1.9) | 510 | (4.4) |
|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 237 | (2.4) | 16 | (0.8) | 253 | (2.2) |
|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 105 | (1.1) | 3 | (0.2) | 108 | (0.9) |
| 80만원 이상 | 97 | (1.0) | 6 | (0.3) | 103 | (0.9) |
| Total | 9,833 | (100.0) | 1,905 | (100.0) | 11,738 | (100.0) |

주) 사망 등의 사유로 2014.10월 지급이력이 없는 경우 분할연금액을 차감한 최종월 당월지급월액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보험료 납부개월 수

(2014. 10월 당해연도 누계 기준, 단위 : 명, %)

| 납부개월 수 | 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
| 1년 미만 | 1,033 | (73.5) | 7,843 | (77.8) | 8,876 | (77.3) |
| 1년 이상 ~ 5년 미만 | 7 | (0.5) | 90 | (0.9) | 97 | (0.8)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44 | (10.3) | 1,050 | (10.4) | 1,194 | (10.4)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26 | (9.0) | 993 | (9.8) | 1,119 | (9.7)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66 | (4.7) | 86 | (0.9) | 152 | (1.3) |
| 20년 이상 | 28 | (2.0) | 25 | (0.2) | 53 | (0.5) |
| Total | 1,404 | (100) | 10,087 | (100) | 11,491 | (100) |

주) 납부개월 수는 2014.10.27. 가입이력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보험료 납부개월 수

(2010. 3월 당월, 단위 : 명, %)

| 납부개월 수 | 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
| 1년 미만 | 413 | (78.82) | 2,724 | (78.55) | 3,137 | (78.58) |
| 1년 이상 ~ 5년 미만 | 3 | (0.57) | 107 | (3.09) | 110 | (2.76)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68 | (12.98) | 550 | (15.86) | 618 | (15.48)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5 | (4.77) | 76 | (2.19) | 101 | (2.53)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5 | (2.86) | 11 | (0.32) | 26 | (0.65) |
| Total | 524 | (100) | 3,468 | (100) | 3,992 | (100)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 수

(2014. 10월 당해연도 누계 기준, 단위 : 명, %)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 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
| 5년 이상~10년 미만 | 480 | (34.2) | 3,843 | (38.1) | 4,323 | (37.6) |
| 10년 이상~15년 미만 | 594 | (42.3) | 3,374 | (33.4) | 3,968 | (34.5) |
| 15년 이상~20년 미만 | 221 | (15.7) | 2,064 | (20.5) | 2,285 | (19.9) |
| 20년 이상 | 109 | (7.8) | 806 | (8.0) | 915 | (8.0) |
| Total | 1,404 | (100.0) | 10,087 | (100.0) | 11,491 | (100.0)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 수

(2010. 3월, 단위 : 명, %)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 남성 | (비율) | 여성 | (비율) | Total | (비율) |
|---------------|-----|---------|-------|---------|-------|---------|
| 5년 이상~10년 미만 | 398 | (75.95) | 2,160 | (62.28) | 2,558 | (64.08) |
| 10년 이상~15년 미만 | 101 | (19.27) | 1,056 | (30.45) | 1,157 | (28.98) |
| 15년 이상~20년 미만 | 25 | (4.77) | 242 | (6.98) | 267 | (6.69) |
| 20년 이상 | 0 | (0.00) | 10 | (0.29) | 10 | (0.25) |
| Total | 524 | (100) | 3,468 | (100) | 3,992 | (100) |

혼인상태별 가구의 소득수준과 구성 비교 (2014년 연간)

(단위: 만원, %)

| | 미혼 | 부부 | 사별 | 이혼 | 계 |
|------|------------------|------------------|------------------|------------------|------------------|
| 계 | 3,346 (100.0) | 5,746 (100.0) | 1,629 (100.0) | 2,619 (100.0) | 4,751 (100.0) |
| 근로소득 | 2,585 (77.2) | 3,748 (65.2) | 671 (41.2) | 1,653 (63.1) | 3,084 (64.9) |
| 사업소득 | 492 (14.7) | 1,473 (25.6) | 296 (18.2) | 630 (24.1) | 1,168 (24.6) |
| 재산소득 | 81 (2.4) | 216 (3.8) | 107 (6.6) | 55 (2.1) | 175 (3.7) |
| 공적이전 | 118 (3.5) | 256 (4.5) | 359 (22.0) | 166 (6.4) | 246 (5.2) |
| 사적이전 | 70 (2.1) | 53 (0.9) | 196 (12.0) | 115 (4.4) | 77 (1.6)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혼인상태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비중(가구주 기준)

(단위: 가구)

| | 미혼 | 부부 | 사별 | 이혼 | 계 |
|------------|-----------|------------|-----------|-----------|------------|
| 전체 가구(A) | 1,610,106 | 12,993,789 | 2,071,159 | 1,967,598 | 18,642,651 |
| 수급자가구(B) | 61,014 | 102,654 | 234,259 | 242,452 | 640,379 |
| 비중 (B / A) | 3.8% | 0.8% | 11.3% | 12.3% | 3.4%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상대 및 절대빈곤율 비교

(단위: %)

| | 미혼 | 부부 | 사별 | 이혼 | 계 |
|---------------------|------|------|------|------|------|
| 상대빈곤율 ¹⁾ | 18.5 | 11.1 | 52.8 | 34.9 | 15.6 |
| 절대빈곤율 ²⁾ | 13.7 | 7.2 | 40.9 | 22.1 | 10.6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 주 1) 상대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2) 절대빈곤율은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계층이 해당 집단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65세 미만 가구주 기준 혼인상태별 가구 생활지표 비교

(단위: 개, 만원, %)

| | 미혼 | 부부 | 사별 | 이혼 | 계 |
|------------|---------------------|----------------------|-------------------|---------------------|-----------------------|
| 계 | 1,589,129 (10.8) | 10,691,908 (72.7) | 667,650 (4.5) | 1,748,569 (11.9) | 14,697,256 (100.0) |
| 고용율 | 88.5 | 95.0 | 73.5 | 82.9 | 91.9 |
| 자가 주거비율 | 495,942 (31.2) | 6,900,815 (64.5) | 348,596 (52.2) | 523,416 (29.9) | 8,268,770 (56.3) |
| 가구소득 | 3,381 | 6,311 | 2,958 | 2,783 | 5,422 |
| 가구순자산 | 13,290 | 32,461 | 18,939 | 11,829 | 27,320 |
| 가구지출 | 2,090 | 4,177 | 2,021 | 1,979 | 3,592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Ⅲ. 분할연금제도의 문제점

1. 분할연금의 이중적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

- 사회보장권 vs 재산권 → 많은 민원 제기 & 현재의 위헌 판결
 - 2015년 개정 이전 :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지급할 수 없다는 많은 민원 발생
 - 2015년 개정 : 재산권적 특성이 매우 강화되었음에도, 2016년 위헌 판결 (64조의 2)

- (위헌 판결 내용) 국민연금법 제 64조 1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판결
 - (재산권 침해 내용) 분할연금 산정 시 제64조 제1항의 “혼인기간”에 법률혼 관계이나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됨
 -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 (현재요구 사항)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 마련 요구
 - ※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음.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임
 - ※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불완전한 독립적 수급권으로의 특성
 - 분할연금에 본인의 연금기여 이력을 추가하여 본인의 급여 수급권을 강 화할 수 없음

2. 사후분할에 따른 문제

- 분할연금 의무자의 사망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 미발생
- 분할연금을 본인의 연금기여를 추가하여 본인의 급여 수급권을 강화할 수 없음

3.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규정의 문제

-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분할연금 수급 불가능

4. 분할연금 의무자 보호 규정

- 분할연금 권리자가 1년 이내 짧은 기간 수급 후 사망하는 경우, 분할연금 의무자의 불만 제기

IV. 분할연금의 해외사례

1. 독일²⁾

□ 분할연금(Versorgungsausgleich) 도입 배경

○ 독일 민법의 영향

- 독일의 민법³⁾은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의 노후 부양의무를 규정. 따라서 이혼 후에도 배우자였던 자들은 생활비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비는 이혼의 책임여부에 관계없이 각자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어 있음⁴⁾.
- 이렇게 생활비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는 특히 자녀양육, 노후생활, 질병, 그리고

2) 독일의 연금분할제도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연금분할(Rentensplitting)이 있으며, 이혼 시 적용되는 연금분할 (Versorgungsausgleich)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시 적용되는 연금분할(Versorgungsausgleich)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독일의 분할연금제도(Versorgungsausgleich)는 2009년 9월 1일 이후 새롭게 개정되었으며, 분할연금에 관한 내용 및 일부 개정된 내용은 독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3) § 1361 BGB & § 1578 [3] BGB

4) § 1569 BGB

실업 등의 경우에 발생⁵⁾

- 따라서 이혼 시 연금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은 필요와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 → 부연하면, 이혼한 일방 배우자가 노후에 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이혼한 상대방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전자는 후자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
- 따라서 1977년 분할연금⁶⁾이 도입되기 이전 초기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생활비를 청구할 권리를 대신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이혼수당(alimony)이나 이혼 시 유족 연금이 지급되었으나, 분할연금의 도입으로 이혼 시 발생하는 수당이나 유족 연금을 대체(von Maydell, 2007).
- 이러한 독일의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두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것은 여성들의 경제상황을 향상
- 따라서 독일 분할연금의 기능은 혼인기간 중 증가한 물질적 가치들의 평등한 구분 뿐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배우자였던 사람들 사이의 부양의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물질적 가치에 있어서의 평등한 구분보다 부양의무에서의 평등을 더 강조(von Maydell, 2007).
- 이러한 분할연금은 재산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이혼 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족법과 사회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제도임

○ 분할연금 도입

-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분할연금은 2009년 일부 개정되어 계속 확대

5) §§ 1570 - 1573 BGB

6) 독일의 연금분할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획득한 연금 가입경력을 동등한 비율로 분할하도록 함으로써 각자에게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연금분할제도는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연금분할(Rentensplitting)이 있으며, 이혼 시 적용되는 연금분할 (Versorgungsausgleich)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시 적용되는 연금분할(Versorgungsausgleich)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분할연금의 목적

- (사회보장권) 연금보험제도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 연금의 고유한 목적은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 시 본인과 그 가족 특히 부부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혼인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뿐 아니라 이혼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함
- (재산분할)
 - 결혼생활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가시적인 재산 뿐 아니라 아직 발현되지 않은 공적연금 수급권까지 균등하게 분할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독일 민법의 정신을 반영
 - 따라서 독일 분할연금의 목적에는 사회보장권과 재산권의 특성이 모두 반영되어 있음

□ 분할연금이 수행되는 연금

- 연금의 분할은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특수지역영업연금제도(Berufsständischen Versorgung)에서 시행
- 또한 2층과 3층의 노후소득체계인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서도 제도화

□ 분할연금의 의의

- 독립적 연금 수급권의 획득 ← 사회보장권에서의 의의
 - 기존의 파생권적 수급권의 성격이 강하고 급여 수준이 낮았던 이혼 유족연금을 대신하여 경제적 약자인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독립적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 또한 분할연금만으로는 5년의 최소 연금가입 기간을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자녀 1명당 3년씩 제공되고 있는 양육 크레딧을 추가하여 독립적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음
- 이혼 시 재산 분할의 확대 - 가족법상의 의의
 - 혼인 중에 발생한 어떠한 재산에도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혼인 중 전업주부였던 처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남편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을 수

급할 수밖에 없었던 맞벌이 처를 위해서도 도움 (堀 勝洋, 2008).

□ 분할연금(Versorgungsausgleich)의 내용

- 연금 분할의 결정은 가정법원을 통하여 이혼절차기와 함께 이루어지며,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
 - ① 이혼 전 부부 양방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던 경우
 - 혼인기간 중 부부 각자가 획득한 국민연금의 소득점수를 이혼 시 동등하게 배분
 - 이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점수는 각각 납부한 보험료로 이루어진 연금점수와 양육 및 수발 크레딧으로 받은 점수를 포함
 - ② 혼인기간 동안 한 명의 배우자만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한 명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력이 없는 경우
 - 혼인 기간 동안의 가입경력을 기초로 가상적 노령연금을 산정하여 동일한 비율로 나눔
 - 연금분할 청구권자로서의 권리는 상대방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짐
 - 부연하면, 연금분할 청구권자의 분할연금은 별도의 공식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소득점수로 전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분할연금 청구권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을 그대로 적용
 - 이를 통하여 연금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 청구권자가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5년의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완화
 - ③ 배우자가 각각 다른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 각자가 획득한 소득점수를 이혼 당시 개별제도의 급여산식을 토대로 가상적 노령연금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분할
 - 그리고 이러한 차액은 다시 별도의 공식을 통하여 소득점수로 환산하여 각자가

7) 독일의 경우 이혼은 재판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두 배우자는, 이혼을 합의했다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은 다른 재산들과 함께 다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堀 勝洋, 2008).

가입하고 있는 제도의 연금 구좌에서 가감

- ④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경우 연금의 분할은 이혼 당시의 급여산식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하고, 그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등하게 나누며 실제적인 분할은 연금의 지급개시 시점에서 이루어짐 (이정우, 2003a).

○ 최소혼인기간

- 최소 혼인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분할연금의 조정 (堀 勝洋, 2008)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연금의 조정이 면제될 수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함
- ① 분할 의무자에게 연금분할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② 분할 권리자가 이혼을 예측하거나 혹은 이혼을 한 후 자신의 분할대상이 되는 연금권을 상실시킨 경우 ③ 분할 권리자가 혼인 중 장기간 동안 가족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⁸⁾ (민법 1587c조 1~3호)
- 또한 가정법원에 의한 분할연금의 조정이 면제되는 경우는 3년 미만의 단기간 결혼생활, 분할연금의 금액이나 양자 간의 차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그리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가능

○ 분할연금 과정

- 가정법원은 분할연금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⁹⁾ 등으로부터 배우자 쌍방의 연금 가입이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분할연금의 금액이 결정된 이후 이러한 정보를 해당 연금공단에 통보하고 연금공단은 이를 배우자 쌍방에 통보
- 또한 결정된 이후 결혼 기간에 이루어진 연금 가입 이력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혼한 부부, 유족 및 연금 공단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조정된 분할연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8) 그러나 현재 법원은 혼인기간 중 분할 권리자가 다른 여자/남자와 동거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의 분할을 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우는 연금 분할이 부당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9) 독일의 분할연금은 공적연금 이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단 공적연금공단 뿐 아니라 해당 보험업자들도 해당될 수 있다.

○ 연금 분할 방식

-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혼인기간에 축적한 부부의 소득점수 중 높은 쪽의 점수에서 낮은 쪽의 점수를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분할하여 주는 형태로 이루어짐
- 따라서 분할연금 의무자는 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반면, 분할연금 권리자는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거나 연금의 수급권을 획득
- 그러나 이러한 연금의 분할은 각 개인이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의 급여 수준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노후 빈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응규정(Anpassungsregelung)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적응 규정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농민노령연금, 특수자영업연금 (Berufsständischen Versorgung), 등에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즉, 분할연금의 의무자에게 감액된 노령연금이 발생한 때, 만일 분할연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분할연금의 권리자에게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의무자의 연금에서 생계비 보조 금액만큼의 감액은 정지됨. 이에 대한 신청은 가정법원에 하며 가정법원은 이러한 적응 여부와 중지금액을 판결함. 또한 이러한 절차에는 법원비용이 발생.
- 둘째, 분할연금 의무자의 연금은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는 반면, 분할연금 권리자의 연금 총액은 법적 공적연금의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신청을 통하여 분할연금 의무자의 연금 감액조치는 정지될 수 있음.
- 셋째, 분할연금 권리자의 사망에 의한 적응규정. 즉, 분할연금 권리자가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전에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이전에 분할연금을 36개월 이상 수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 감액은 정지됨

2. 캐나다¹⁰⁾ – Canada Pension Plan

□ 분할연금 도입 배경

- 1978년 소개된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의 분할연금(Credit Splitting)은 사실혼을 포함하는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연금의 기여는 공유된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입되었음

□ 분할연금의 목적 및 의의

-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있었거나 낮은 임금을 수급했던 배우자가¹¹⁾ 이혼 후 적절한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즉, 이혼 후 연금의 소득이력(CPP credit)¹²⁾을 분할하는 것은 양방 배우자가 미래 연금급여에¹³⁾ 대하여 동등하게 공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분할연금의 내용

- 이혼한 일방의 배우자가 캐나다 연금청에 분할연금을 청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 비로소 효력을 발생
 - 그러나 1994년부터 2004년 동안 이혼한 부부들 중 분할연금을 신청한 건수는 약 15%로 그 신청율이 매우 낮음 (CPP, 2008).
- 적용범위
 - 1978년 소개된 캐나다의 소득이력분할은 1987년 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이혼 시 의무 사항이 되었음¹⁴⁾. 1978년부터 1987년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분할연금은 법률혼에 한정되어 적용되었으나, 1987년 법 개정으로 분할연금은 사실혼과 별거까지 확대되어 적용

10) 캐나다의 분할연금은 독일과 같이 이혼 시 발생하는 소득이력분할(CPP credit splitting)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노령연금을 균분하여 수급할 수 있는 연금공유(pension sharing)로 나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이력분할(CPP credit splitting)을 중심으로 언급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은 캐나다 연금의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www.servicecanada.gc.ca

11) 이 경우 배우자는 주로 여성이 된다.

12)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은 가입자들의 연금대상소득(pensionable earnings)과 연금에 대한 기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을 연금의 소득이력(CPP pension credits)이라고 한다.

13)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한다.

14) 그러나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는 현재 Alberta, British Columbia, Saskatchewan, 그리고 Quebec 주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연금의 분할은 다른 재산분할 청구권과 같이 이혼한 양방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적용대상

- 캐나다의 경우 다음의 네 경우는 분할연금 적용 대상이 아님

① 상대 배우자의 연 소득이(Pensionable Earnings) 연금가입의 최저소득선(the Year's Basic Exemption)의 두 배 이하일 경우

※ 2016년 연금가입의 최저소득선은 \$ 3,500임

② 18세 이전 기간 혹은 70세 이후 기간

③ 배우자가 CPP 혹은 QPP의 노령연금 수급자였던 기간

④ 배우자가 CPP 혹은 QPP의 장애연금 수급자였던 기간

○ 적용방법

① 이혼 시

- 이혼 시 발생하게 되는 연금의 소득이력 분할은 최소 1년 이상 혼인을 지속했어야 하며, 배우자 중 일방이 CPP에 신고를(notify)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은 없음

② 별거 시

- 1987년 이후 발생한 별거 시 발생하게 되는 연금의 소득이력 분할은 최소 1년 이상 혼인을 지속했어야 하며,

- 최소 12개월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고,

- 배우자 중 일방이 CPP에 청구를 하여야 함

-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분할연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일방이 사망했다면, 사망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함

③ 사실혼의 해소

- 사실혼의 해소가 1987년 이후 발생한 경우 연금의 소득이력 분할은 최소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어야 하며,

- 배우자 일방의 청구 시 최소 12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고,

- 분할연금의 청구는 사실혼이 해소된 때로부터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함께 사는 기간 동안 축적하였던 연금의 소득이력을 평등하게 균분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연금분할은 부부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았던(혹은 CPP에 가입이력이 없었던) 일방의 연금 소득이력은 높여주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았던 일방의 연금 소득이력의 하락을 야기하게 됨

3. 일본¹⁵⁾

□ 분할연금 도입 배경

- 변화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화
 - 일본의 분할연금은 증가하는 이혼율¹⁶⁾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적용되는 남성 중심적인 재산분할 청구권에서 야기되는 불평등¹⁷⁾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슈화
 -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여성과 연금”이라는 특별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본 위원회의 목적은 변화된 여성의 생활패턴에 적합하도록 분할연금을 포함하여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분할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지되었으며, 2004년 6월 분할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 (Takahata, 2005).

□ 분할연금의 목적 및 의의

- 일본 후생연금의 연금 분할 목적
 - ① 첫째, 이혼한 처의 연금 개선
 - 일본 역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남성에 비하여 낮으며, 급여수준도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15) 일본의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www.nenkin.go.jp
 16) 일본 가정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일본은 289,836명이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Jihou, 2004).
 17) 이혼 시 적용되는 남성 중심적인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하며, 많은 이혼 여성들은 사회복지 급여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들의 노후 빈곤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이혼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연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의 연금액이 낮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이혼한 여성은 본인의 기초노령연금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여성들의 빈곤문제가 이슈화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연금이 도입¹⁸⁾
- ② 둘째, 분할연금은 연금에 관련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 즉, 분할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이혼 시 연금의 분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음
 - 남편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 일부를 남편이 처에게 지불을 하거나, 남편이 아직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재산분할 시 연금을 고려하여 분할하도록 하고 있었음
 - 그러나 전자의 경우 실제로 남편이 처에게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더 이상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
 - 또한 재산분할 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음
- ③ 셋째, 유족후생연금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 이혼 후 남편이 재혼한 경우, 재혼한 처에게만 유족후생연금이 전액 지급되어 이혼한 처에게는 아무런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 (堀 勝 洋, 2008).

□ 분할연금의 내용

- 합의 분할제도 & 3호 분할제도
 - 합의 분할제도 : 맞벌이의 경우 이혼 시 양방의 후생연금을 분할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
 - 3호 분할제도 : 일방만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3호 가입자 기간 동안 상대방의 후생연금을 분할하는 3호 분할제도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

18) 그러나 후생연금은 피용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자영자 등은 분할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분할연금의 방식

- 후생연금의 표준소득(기여이력)을 분할
- 부연하면, 분할연금 의무자는 본인의 후생연금의 표준소득에서 상대방에 분할을 해 준 표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표준소득에 기초하여 연금액을 계산. 반면, 분할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후생연금 표준소득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표준소득에 기초하여 연금액을 계산
- 단, 분할 후의 기록에 기초하여 후생노령연금 등 수급 시, 자신의 후생연금의 가입기간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 등의 수급 자격기간을 충족시켜야 함

○ 합의 분할제도 수급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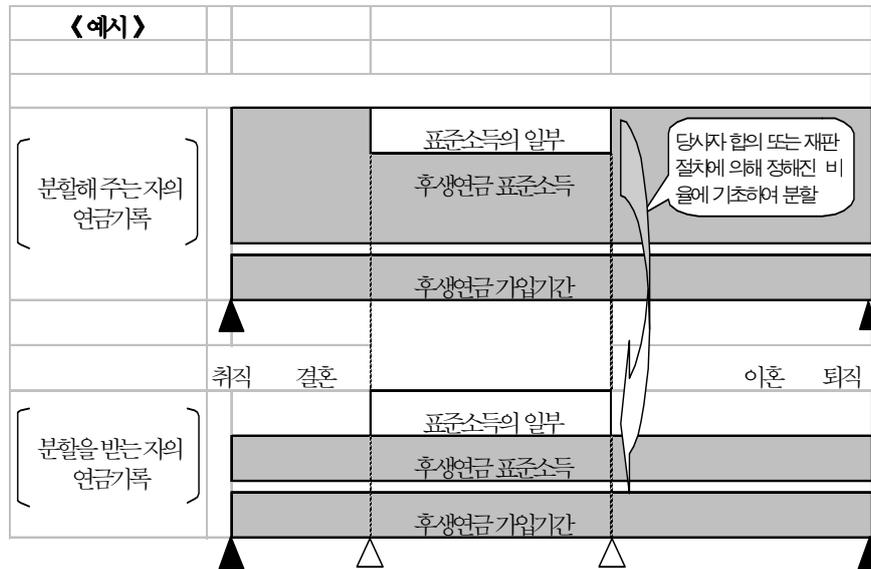
- 2007년 4월 1일 이후에 이혼하였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¹⁹⁾ 적용
- 분할의 대상 : 혼인기간 중 후생연금 기록(표준보수월액²⁰⁾)
- 연금분할 비율 :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절차에 의해 연금분할의 비율(안분비율²¹⁾)을 정하여 분할
- 분할 방식 : 분할은 혼인기간 중의 후생연금 표준소득이 많은 자로부터 적은 자에게 표준소득을 분할하는 방식
- 기한 : 2년 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연금분할이 가능
- 합의 분할 청구 시 혼인기간 동안 3호 분할에 해당되는 기간이 있다면 합의 분할과 동시에 3호 분할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

19) 배우자 양방이 후생연금의 가입자들일 경우 적용되는 합의분할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혼 관계만 적용이 되며 사실혼 관계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한 명은 후생연금에 가입해 있고 한 명은 3호 가입으로 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분할제도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즉, 2007년 4월 1일 이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안에 당사자 일방이 국민연금 제3호 가입자이었던 자에 국한된다. 또한 이혼을 취소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20)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의 경우는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안의 국민연금 제3호 가입 기간 중의 후생연금에 가입한자의 후생연금 표준소득"이다.

21) 안분 비율은 분할 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 중 당사자의 후생 연금 기록 (표준 보수 월액 · 표준 상여 금액) 합계액 중 분할을 받음으로써 증액되는 측의 분할 후 지분 비율이다. 즉,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분할을 받을 경우 아내가 받게 되는 분할 비율을 안분비율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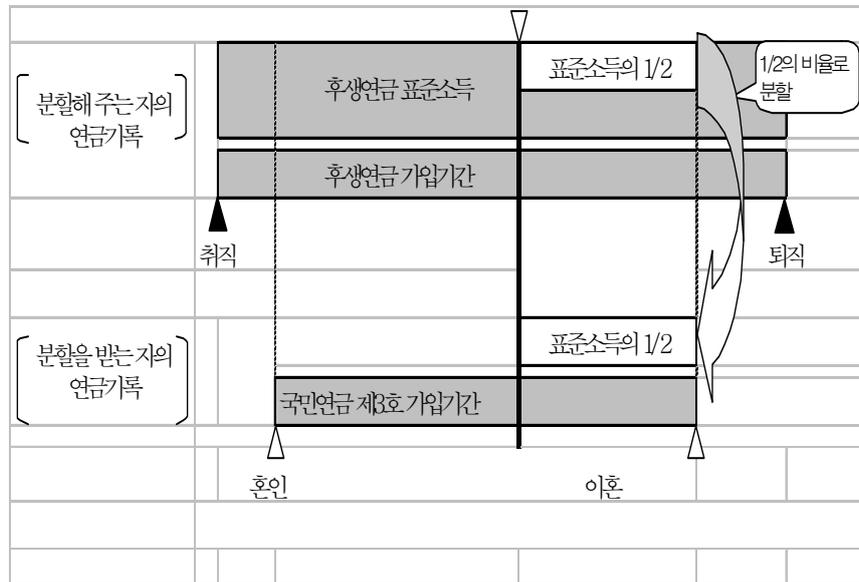
합의분할제도 사례



○ 3호 분할제도 수급 조건

- 배우자 중 일방은 후생연급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방은 국민연금의 제3호 가입자인 경우
- 2008년 5월 1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 해당되며 2008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 제3호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
- 분할의 대상 : 2008년 4월 1일 이후의 국민연금 제3호 가입기간 중의 상대방의 후생연금 기록 (표준보수월액)
- 연금분할 비율 : 후생연금 기록을 2분의 1씩 당사자 간에 분할
- 분할 방식 : 후생연금의 가입자였던 자로부터 제 3호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표준소득을 분할하는 방식
- 기한 : 2년 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연금분할이 가능

3호 분할제도 사례



○ 합의 분할제도 진행절차

- 우선, 합의 분할의 경우 안분 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방 배우자의 후생연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 따라서 부부 쌍방 혹은 일방은 사회보험청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청에 대한 정보제공의 청구는 사회보험 사무소를 경유하여 실시 할 수 있음. (반면, 제 3호 분할의 경우는 연금 분할의 비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보 제공의 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정보 제공의 청구를 할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 기초연금번호 등을 기재한 “연금분할을 위한 정보 제공 청구서”를 관련 서류들과 함께 사회보험청에 제출
- 사회보험청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할 때 “연금분할을 위한 정보통지서”를 통해 통지. 그 내용은 부부의 대상기간 표준보수총액 그리고 안분비율의 범위 등을 포함.
- 이러한 정보 제공의 청구는 이혼 후 뿐 아니라 이혼 전에도 가능하지만, 이혼 전의 경우는 정보 제공의 청구를 한 일방에게만 정보를 통지.
- 또한 합의 분할의 경우는 안분비율을 가정법원이 규정하기 때문에 법원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청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배우자 중 일방이 표준보수 개정의 청구²²⁾를 하여야 비로소 연금의 분할이 이루어 짐

- 이 때 표준보수 개정 청구의 안분 비율은 부부의 합의에 의한 비율 혹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한 비율로만 개정이 가능
- 더불어 표준보수 개정청구는 정보제공의 청구와 달리 이혼 전에는 불가능하고 이혼 후에만 할 수 있으며, 이혼한 이후 2년²³⁾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

〈표 3-1〉 후생연금의 합의분할제도 수속 진행

| |
|---|
| <p>1. 연금분할을 위한 “정보제공의 청구” (사회보험사무소에 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의 청구는 “연금분할을 위한 정보제공 청구서”를 당사자들이 함께 혹은 일방이 청구 <p style="text-align: center;">↓</p> <p>2. 연금분할을 위한 정보통지서의 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청은 “연금분할을 위한 정보통지서”를 통해 정보를 통지, 통지 방법은 청구 방법이나 그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짐 1) 두 명이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각각에게 교부 2) 혼자 청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혼 등을 한 경우에는 청구한 쪽과 그 상대방에게 교부 나. 이혼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쪽에게만 교부 <p style="text-align: center;">↓</p> <p>3-1. 당사자 간의 안분비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합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음 1)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이 연금 분할 청구 시에 합의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사회보험사무소 창구에 직접 지참 2) 합의 내용 등을 증명하는 공증증서의 등본 (초본)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를 첨부 <p style="text-align: center;">↓</p> <p>3-2. 당사자 간의 안분비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중 한 명이 가정법원에 신청, 다음과 같은 재판 수속으로 안분비율을 정할 수 있음 1) 합의 2) 조종 수속 3) 이혼 소송 중의 부대처분의 수속 <p style="text-align: center;">↓</p> <p>4. “연금분할의 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분할의 청구는 이혼 등을 한 후에 배우자 양방 혹은 일방이 사회보험사무소에 “표준보수 개정 청구서”와 안분 비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음 ※ 연금분할은 안분 비율을 정했다하더라도 사회보험 사무소에 청구하지 않으면 후생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록은 변경되지 않음 ※ 또한 청구기한(원칙적으로 이혼 등을 한 날의 다음달부터 기산해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p> <p>5. “표준보수 개정통지서”의 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분 비율에 기초해 당사자 각각의 후생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록의 개정을 실시해 개정을 한 후 보험료 납부 기록을 각각에게 통지 |
|---|

자료 : 일본연금기구(www.nenkin.go.jp).

22) 표준보수 개정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부부 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초연금번호, 청구해야 할 안분 비율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증서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증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법원이 청구해야 할 안분 비율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확정심리, 조정조서,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堀 勝洋, 2008).

23) 2년의 청구 기간 규정은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의 청구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국가 | 독일 (공적연금 +a) | | 캐나다 (CPP) | | 일본 (후생연금) | |
|----------------|---|--|--|---|--|---|
| 구 분 | Versorgungsausgleich | Rentensplitting | CPP Credits Splitting | Pension Sharing | 합의분할제도 | 3호 분할제도 |
| 제도 개시 시기 | 1977년 7월 1일 | 2002년 1월1일 | 1978년 1월 1일 | | 2007년 4월 1일 | 2008년 4월 1일 |
| 분할 사유 | ① 이혼 ② 사실혼의 해소 | ① 혼인관계(사실 혼 포함)를 유 지하고 있는 배 우자 일방의 신 청 | ① 이혼 ② 별거 ③ 사실혼의 해소 | ①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일방 의 신청 | ① 이혼 ② 혼인의 해소 ③ 사실혼의 해소 | ① 이혼 ② 혼인의 해소 ③ 사실혼의 해소 ④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 으나 사실상 이 혼한 것과 마찬 가지 사정에 있 는 것으로 인정 된 경우 |
| 분할 시기 | 분할 사유가 발생한 때 | 부부 모두 노령연 금 수급연령이 되 는 시기 | 분할 사유가 발생한 때 | 부부 모두 60세 이상 으로 노령연금을 수 급하고 있는 경우 | 분할 사유가 발 생한 때 | 분할 사유가 발생 한 때 |
| 분할 대상 | 소득점수의 분할 | 소득점수의 분할 | 소득이력의 분할 | 연금급여의 분할 | 혼인기간 중의 후 생연금 표준소득 (노령후생연금 & 장애후생연금) | 후생연금 가입자의 후생연금 표준소득 (당사자 일방의 제3 호 가입기간 동안) |
| 분할 결정 주체 | 국민연금공단 or 가정법원 or 당사자의 합의 | 국민연금공단 | CPP | CPP | 가정법원 or 당사자의 합의 | 사회보험청 |
| 분할 방법 | 함께 사는 기간 동안 축 적한 부부의 소득점수 중 높은쪽의 점수에서 낮은쪽의 점수를 공제한 후 남은 점수의 50%를 소득점수가 낮은 배우자 에게 분할 | 함께 사는 기간 동 안 축적한 부부의 소득점수 중 높은 쪽의 점수에서 낮 은쪽의 점수를 공 제한 후 남은 점수 의 50%를 소득점 수가 낮은 배우자 에게 분할 | 함께 사는 기간 동안 축적하였던 연금의 소 득이력을 평등하게 균 분하여 나눔 (소득이 력이 높은쪽에서 낮은 쪽으로 분할) | 발생한 연금급여를 합하여 동등하게 분 할하여 지급 | 혼인기간 중의 후 생연금 표준소 득이 많은 자로 부터 적은 자에 게 표준소득을 분할 | 제3호 가입기간 중 에 후생연금의 가 입자였던 자로부터 제3호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표준소 득을 분할 |
| 분할 비율 | ① 2분의 1 ② 배우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금분할을 안 할 수 있음 ③ 예외적인 경우 분할 의 면제도 가능 | 2분의 1 | 2분의 1 | 2분의 1 | 당사자 합의 또 는 재판절차에 의해 인정된 연 금분할 비율 (안 분비율의 상한은 1/2로 규정) | 2분의 1(고정) |
| 절차 | 당사자 일방에 의한 청 구 | 부부의 자발적 합 의에 의한 청구 | 통보(notify) or 청구 | 당사자의 청구 | 당사자 일방에 의한 청구 | 피부양 배우자로서 제3호 가입자였던 자에 의한 청구 |

V. 분할연금 개선방안

1. 분할연금의 이중적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

1) 사회보장권 vs 재산권

□ 연금 선진국들의 분할연금 특성은 어떠한가?

○ 파생적 수급권 < 독립적 수급권

- 분할된 연금이력에 본인의 기여 이력 추가하여 수급권 획득 가능

○ 사회보장권적 특성 & 재산권적 특성

- 국가의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권적 특성을 우위에 두기도 하며 재산권적 특성을 우위에 두기도 함

- 해당 국가의 사상적 특성(영미권 vs 유럽 대륙),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생각, 여성 연금수급권에 대한 강조의 정도에 따라 사회보장권이나 재산권 중 강조하는 비중이 다름

- 사회보장권 특성²⁴⁾ : 독일, 스위스 > 캐나다 ≥ 일본 >> 한국

=> 사회보장권적 특성을 강화할 필요 ① 이혼 가구의 높은 빈곤율 ② 이혼한 전처는 유족연금 수급 못함 ③ 매우 낮은 수준의 여성연금 수급권 ④ 부양적 요소

독일 : 판결에 의한 이혼만 가능 → 대다수는 분할연금 신청 (90% 이상) → 반분 원칙 (예외조항 있음)

스위스 : 판결에 의한 이혼만 가능 → 대다수는 분할연금 신청(자동반영) → 반분 원칙

일본 : 합의이혼 가능²⁵⁾ → 분할연금 신청율 낮음 (2014년 10% 이하) → 기초(반분원칙), 후생(합의원칙, 그러나 판결의 대부분은 반분 결정)

캐나다 : 판결에 의한 이혼만 가능 → 분할연금 신청율 낮음 (2007년 15% 이하, 분할연금은 의무이나 포기에 대한 규제가 없음) → 반분 원칙

※ 미국 : 이혼 배우자를 위한 급여, 상대 배우자의 기여 이력을 바탕으로 급여 제공하나 상대배우자의 급여수준 변화 없음 (파생적 수급권 성격)

24) 사회보장권 & 재산권의 판단 기준

- 사회보장권 : 분할연금의 강제성 (신청율)
- 재산권 : 분할비율의 자율성 등

□ 분할연금의 위헌 판결은 타당한가?

○ (일본 사례) 분할연금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본 법학자들의 견해

- 합의 분할 : 부부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기초해 연금을 분할하는 한 헌법 2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 3호 분할 : 헌법 29조 2항은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용되도록 법률로 이를 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호 분할제도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한 경우에는 헌법 29조에 위반하지 않음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일본 사례) **혼인기간**에 대한 일본 법학자들의 견해

- (제 3호 가입기간만 인정) 사실혼 관계의 연금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3호 분할만 인정
- (분할연금에서 혼인기간) 분할연금의 분할 기간이 재산분할과 같은 동거 기간이 아닌 혼인기간인 것은 짙은 재산의 청산이 아니라 혼인 관계라는 신분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

○ (일본 사례) 합의분할에서 **재판에 의한 분할비율**

- 사법통계에 의하면, 가정법원의 중재 및 법원 판결에서는 대부분 반분 결정 ← 안분 비율에 대한 논란 거의 없음
- (10년 별거 후 이혼 사례) 합의분할에서 안분비율 5 : 5

25) 합의이혼 90% 이상

※ 일본 합의분할에서 분할비율 결정 과정

① (부부 간 합의 시도) 연금공단 통지서에 기재되어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부부간에 분할 비율 논의 → 합의 실패 시 ② (가정 법원의 조정 신청, 2000엔) 중재 위원에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조정 위원이 적절한 분할 비율 제시 → 조정 비율 불만 시 ③ (법원 심판) 법원의 분할 비율 판결

□ 단기적 개선방안 - 위헌 판결에 대한 대응

○ (정춘숙의원 대표 발의안)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로 개정

- 장점 : 위헌 판결에 대한 비교적 손쉬운 대응

- 단점 : 분할연금의 사회보장권적 특성 포기

ex) 위헌 소송 반대의 경우 문제 : 법률혼 관계이나 남편(연금기여)은 외도로 중혼 관계에 있으며 아내(연금무기여)는 자녀를 어렵게 키우며 법률혼을 유지 → 이혼 후 아내가 분할연금 신청 → ??

□ 장기적 개선방안

○ 분할비율은 반분을 원칙으로

-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위하여 분할비율의 조정 및 면제 가능하도록

○ 분할의 면제

- 연금의 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 반분하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이혼조정 과정에서 분할연금의 면제를 권고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부연하면, 분할연금의 액수가 적거나 서로 교환할 금액이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조정과정에서 판사의 결정에 따라 분할연금의 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양자가 이러한 권고를 수긍하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함

분할연금의 면제

: 분할연금의 액수가 적거나 서로 교환할 금액이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조정과정에서 판사의 결정에 따라 분할연금의 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양자가 이러한 권고를 수긍하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분할 비율의 조정

- 역시 예외적인 경우, 분할의 비율은 가정법원의 재판 결과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연금의 분할 비율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²⁶⁾하는 예외적인 경우 역시 가정법원의 재판 결과에 의한 분할 비율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그러나 이러한 경우 분할을 적게 받는 배우자의 분할의 비율은 20% 이상 ~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이렇게 최소 비율을 20%로 고정한다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할연금의 재산권적 특성 역시 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
- 또한 연금의 분할로 인하여 재판으로까지 갈 확률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더불어 이를 통하여 민원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분할비율의 조정

: 연금의 분할 비율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예외적인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 결과에 의한 분할 비율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그러나 분할을 적게 받는 자의 분할 비율은 20%~50%로 규정

2. 사후분할에 따른 문제

□ 이혼 즉시 기여이력 분할

○ 연금 분할의 시기

- 현행 분할연금의 분할 시기는 배우자였던 자 중 일방의 노령연금이 발생하고 또 다른 일방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1세에 도달한 때, 발생한 급여액을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신청 가능
- 그러나 이는 이혼 시점과 연금 분할의 시점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0-20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시에 행정상의 어려움 역시 발생

26)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경우, 혹은 유책 배우자에게 분할연금까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분할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금 분할의 시기는 분할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연금 분할의 방법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기여(소득)이력(B값)의 반분을 원칙으로 함

소득(가입)이력의 분할
 ;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B(소득비례부분)값은 소득이 많았던 배우자의 B값에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B값을 뺀 나머지 값을 반분한 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줌.

- 단, 이 때 배우자 중 한 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은 A(균등부분)값을 50%로 계산한다면, 재정 중립적인 개선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즉, 현행 국민연금은 급여의 계산식에 균등부분인 A값과 소득비례부분인 B값이 함께 있기 때문에, B값만 반분하여 분할연금을 지급할 경우 일반 수급자에 비하여 분할연금 수급자들은 총 급여를 더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
- 그 결과 이혼하지 않은 수급자들과 이혼한 수급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연금재정에 미비한 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B값 뿐 아니라 A값을 반분한다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그러나 재정의 중립성 보다 이혼한 여성으로 대표되는 분할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A 값을 반분하지 않고 B값만 나누어 분할연금을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임²⁷⁾

1안 - 연금을 분할 할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간은 A값의 50%로 계산

2안 - 연금을 분할 할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간도 A값의 100%로 계산

27)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A값과 B값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이혼한 여성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분할연금을 계산할 때 A값을 나누지 않고 100%로 계산하고 있다.

○ 장점

- 이혼 즉시 기여이력을 분할하는 안은 분할연금을 완전한 독립적 수급권으로 인식한 것으로써, 다양한 분할연금 문제 및 민원의 해소 가능
- 또한 분할연금의 소득(가입)이력에 본인의 연금 기여 기록을 추가하여 독립적인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금 기여기록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장애와 사망에 따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분할연금 권리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타당(현재는 5년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유지 시 약 30% 정도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수치는 하향될 것으로 예상됨).

○ 단점

- 기존의 제도에서 적은 금액이나마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될 수도 있음

3.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규정의 문제

○ 장기적으로 1년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4년 이하 결혼 생활을 한 후 이혼하는 비율은 전체 이혼 사례 중 2015년 현재 약 24.7%를 차지²⁸⁾
- 또한 앞에서 살펴본 해외사례에서도 이렇게 엄격한 혼인 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없음
- 그리고 분할연금의 액수가 적은 경우 분할연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규정을 1년으로 변경하여도 적은 액수로 불필요한 행정처리만을 야기하는 문제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그러나 기여이력 분할로 개선할 경우, 당분간은 5년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 연금 수급권 획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8) 2016, 통계청 <2015년 혼인·이혼 통계>

4. 분할연금 의무자 보호 규정

- 분할연금 권리자 조기 사망 시, 분할연금 의무자의 연금 회복
 - 분할연금 수급자가 3년 미만 연금을 수급하다 사망한다면, 분할연금 의무자의 연금을 회복시켜주는 방안
 - 2014년 9월 현재 특례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의 평균지급액은 479,150원으로 그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노령연금 급여액에서 연금을 분할한다면 그들의 노후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분할연금으로 줄어든 기여 이력 복구
 - 분할연금 의무자가 분할연금으로 잃은 기여이력을, 원하는 경우, 추납 등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토론 1

국민연금 분할연금 토론문

현소혜_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연금 분할연금 토론문

현소혜_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연금의 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¹⁾이므로, 연금의 형성에 다른 일방이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는 연금의 분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이다.²⁾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도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결론에 있어서는 지극히 타당하다.

문제는 연금의 형성에 다른 일방이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은 이에 대해 정한바가 전혀 없이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을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만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비판³⁾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2015.12.29.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2를 신설하여「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6.12.29.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흥미롭게도 개정 「

1)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 판결(全);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판결(全).

2)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변동된 재산관계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2013.11.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

3) 대표적으로 김태진,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소고-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 2016, 147-173면; 裴寅九,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검토-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0집, 2011, 263면; 최문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사회과학연구 제26권 2호(2010), 12면 등.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위 결정의 별개의견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위헌성을 논함에 있어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본 토론문은 헌법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위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한다.

본 토론문의 주된 관심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와 그 타당성(Ⅱ.),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8.6.30.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개선입법의 방향(Ⅲ.)을 검토하는데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과 제46조의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0과 제25조의11도 「국민연금법」과 동일한 구조의 분할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결정은 위 각 법의 위헌 여부 및 개정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II.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의 타당성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사법적인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사회보험법적인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그 제도의 성격 및 취지를 달리한다. 둘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위 각 논거의 타당성을 차례로 살펴본다.

1. 연금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법적 성격, 즉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청구권인가, 공법상 청구권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 별다른 논의가 없지만, 공법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공법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제도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면서 사법상의 재산분할 청구제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분할연금 청구권이 공법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분할연금청구권은 이러한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공법상 청구권으로서의 특수성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청구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로, 당사자의 간이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법률로 인정한 고유의 공법상의 권리이다. 대법원이 연금을 장래의 재산으로 보아 아직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1999년에 이미 「국민연금법」은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하였다. 만약 혼인관계가 존속 중이었다면 ‘파생적 수급권’⁴⁾의 형태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해 온 연금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었던 배우자가 이혼과 동시에 이를 상실하게 된다면, 연금가입자격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결국 영구히 자력으로 해소가 불가능한 노령빈곤의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연금분할은 본질적으로 배우자의 파생적 수급권을 이혼과 동시에 분할연금청구권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만약 분할연금청구권이 사법상의 청구권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은 마땅히 이혼한 배우자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국가(보다 정확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를 상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 자는 전 배우자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연금 불지급 결정 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셋째, 분할연금청구권을 사법상의 청구권으로 파악한다면 청구권자가 분할 받은 연금은 이혼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금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혼을 계기로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 스스로도 60세에 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파생적 수급권’이란 경제활동을 통해 연금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자력으로 확보하는 독자적 수급권과 달리, 연금제도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에서 배우자의 연금급여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한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다. 이정우,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9권2호(2003), 65-66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지만(분할연금 신청구 제도), 위 청구를 한 때에도 실제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신청구자가 60세에 달한 후에야 가능하다. 분할연금 제도를 단순한 청산의 목적을 넘어 노령에 달한 청구권자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체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문들이다.

넷째,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청구권은 그 자체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의 일종으로 취급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5조제3항의 반대해석상 이는 명백하다. 따라서 분할연금청구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이미 청구권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라도 150만원 이하의 급여 및 「국민연금법」 제54조의2에 따른 급여수급전 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 제3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권리자가 분할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은 비록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⁵⁾

나. 사법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

하지만 분할연금청구권을 오로지 공법상의 청구권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첫째, 분할연금청구권은 단순히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시혜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가 아니다. 청구권자는 자신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배우자가 국가를 대해 취득한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 자신의 기여한 바를 청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014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연금분할은 이혼 후 부양의 문제가 아닌 ‘청산’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⁶⁾ 분할연금청구권은 사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연장형’일

5)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홍남희, “이혼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49집(2015), 323-324면은 대법원이 위 판결로서 압류금지채권을 창설하였다고 비판하나, 판결이 과연 그러한 취지인지는 의문이다.

6)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 판결(全);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全).

뿐이며, 그 자체로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창설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⁷⁾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분할연금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이유는 바로 이러한 권리의 의존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혼으로 인해 파생적 수급권을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연금분할 제도의 보호영역 안에 들어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분할연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유무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분할연금청구권은 국가의 재정투입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라, 전 배우자의 출연과 손실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둘째, 분할연금청구권을 순수한 공법상의 권리라고 본다면, 국가를 상대로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을 뿐이며 당사자와의 사이에서 그 권리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처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자체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협의에 의해 정한 분할비율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고, 그 익월부터 그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당사자 쌍방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내용이 결정되는 내용의 권리를 공법상 청구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분할연금청구권의 포기도 마찬가지이다. 재산분할의 실무상 이혼 당시 일시금으로 고액의 재산분할을 받으면서 장래의 분할연금청구권은 포기하거나, 부부 쌍방이 서로 간에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므로, 국가는 이에 구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4 제1항도 마치 분할연금수급권의 포기는 분할의무자인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분할비율을 0%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국가는 당사자의 포기의 의사표시에 구속된다.

7) 대법원 역시, 舊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에게 부여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공법상 권리라고 판시한 반면(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舊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 부여되는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법상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6450 판결).

넷째, 만약 분할연금청구권을 '과생적 수급권'의 전환형이라고 파악한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청구권은 분할의무자 쪽의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가령 전 배우자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변경된 경우에 분할청구권자는 더 이상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혼인 중이었다더라도 노령연금을 더 이상 공동으로 향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 65조 제1항은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연금청구권을 재산분할청구권의 연장형으로 본 결과 전 배우자에게 어떠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청구권자가 청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⁸⁾

다섯째, 만약 분할연금청구권이 과생적 수급권의 전환형에 불과하다면 연금분할청구권자에게 부양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분할연금청구권을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분할청구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의 재혼을 이유로 분할연금청구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분할연금청구권의 본질은 이혼 후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기여에 대한 청산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물론 연금분할청구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권리가 상속되거나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연금분할청구권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분할의무자의 연금수급액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은 부양의 필요성과 연금분할이 무관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청구권은 공법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⁹⁾,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의존한다. 사법적인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사회보험법적인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별도의 재산분할심판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할연금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와 같은 분할연금청구권의 고유한 성격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8)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분할연금청구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생한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독자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이정우(2003), 71면 참조.

9)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 1999.4.29. 선고 97헌마333 결정.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분할연금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과생적 수급권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놓인 배우자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법상 청구권에 불과하였을지 모르나¹⁰⁾, 위 판결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설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의해 이제 분할연금청구권은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그의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공법의 영역에서 보다 손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로 전환되었음이 명백하다.

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강제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위 조문은, 위 결정의 별개의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당하게 노령연금이 감액될 처지에 놓이게 된 전 배우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분할의무자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분할연금청구권을 감축시킬 것인지, 혹은 자신의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감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입법자의 재량

물론 일반적인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분할청구권자가 분할의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법」과 같이 일단 분할청구권자에게 권리를 주고, 분할의무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 이를 다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간 상황이 역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당사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 제도를 설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위조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무효인 혼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위험이 있는 사안에서, 국가가 혼인신고에 관해 실질심사주의를 도입하여 위조된 혼인신고가 수리될 여지

10)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경우 이혼배우자를 배려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여, 퇴직연금이 반드시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대법원 1997.3.14. 선고 96므1533 등 판결은 과거 연금분할청구권을 오로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만 파악하였던 대법원의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를 처음부터 봉쇄할 것인지, 또는 일단 혼인신고를 수리한 다음 위조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부당한 연금분할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는 사안에서 연금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배우자가 분할 연금을 신청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봉쇄할 것인지 또는 일단 분할연금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다.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신설된 것은, 당사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연금분할이 타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율을 달리 정하라는 취지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보다 이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제64조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해결방식을 정면으로 비난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그대로 입법에 반영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한 분할연금청구권의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보다 정확히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입법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적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조문화의 문제점

그런데 ‘실질적 혼인관계의 존재’ 자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요건으로 적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첫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분할연금 신청이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미 이혼한 부부 사이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언제까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만한 권한이 있는지, 설령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그 조사에 따른 지급 또는 불지급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당사자는 이를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본래 분할연금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연장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그 성립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부부

사이에 실질적 혼인관계 존속 여부에 행정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국민연금법」 제64조를 개정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법 제64조의2가 남아 있으므로, 당사자 또는 가정법원은 연금에 관해 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나 심판을 할 때에는 전체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¹¹⁾하여 그 분할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실질적 혼인기간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을 정할 때와 같은 법 제64조의2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 중복하여 고려되는 셈이다. 물론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 법원이 기여도 산정시 더 이상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¹²⁾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을 생각하면 양 기관의 판단이 배치될 경우에 대비하여 실질적 혼인기간의 장단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할비율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제척기간의 차이도 문제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반면 분할연금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3항). 민법상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사람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고, 자신이 60세가 된 때에는 5년 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래 재산분할의 제척기간을 2년의 단기로 구성한 것은 이혼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혼한 지 수십년이 지난 후 다시 분할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묵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심사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또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은 낮은 반면, 실질적 혼인기간 중 기여도는 높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연금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전자는 분할연금액에 반영되는 반면 후자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불균형에 처하게 된다.

11)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12) 「국민연금법」과 무관하게 본래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분할재산의 대상을 결정하는 요인일 뿐이므로 분할비율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 이지는, “이혼시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 민사법학 제70호(2015), 398면 참조.

III. 입법론 (1): 개별법령 개정의 관점에서

II.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에 따라 2018.6.30.까지 「국민연금법」의 개정작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향후의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실질적 혼인기간의 요건 신설

개정 작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 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함을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축조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¹³⁾

| 현 행 | 개정안 |
|--|--|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다만,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적 심사만으로도 실질적 혼인기간의 계산이 손쉽게 가능하도록 실무상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을 개정하여 분할연금지급 청구서에「혼인관계의 실질적 존속기간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진술서」를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3) 2017.2.13.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도 대체로 이와 같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X7P0W2K1M3T1C5F3B1E4V3B8H6G7
 참조(최종방문일자 2017.2.18.).

물론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허위로 진술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진술서 제출시 허위진술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급여가 환수될 수 있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혼인관계의 실질적 존속기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다. 이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 일방의 주장에 따라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는 그에 따른 자신의 노령연금 감액처분을 다룰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청구와 재산분할청구 간의 관계를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분할연금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 정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와 같이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배우자였던 자 측이 스스로 혼인관계의 실질적 존속기간을 다투도록 하는 방식의 입법형태를 비판한바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실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뿐만 아니라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¹⁴⁾, 아직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다. “결정주문뿐 아니라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령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¹⁵⁾이라고 관시한 바 있을 뿐이다. 대상결정의 경우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6인 이상의 찬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관한 실시 부분은 방론에 불과하며,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중요이유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가장 주된 위헌 이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법문에 명시한 이상,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현재의 취지를 그대로 조문화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주기 때문

14)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를 종합하고 있는 문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준중의무”, 헌법재판연구원, 2014, 39-54면 참조.

15) 현재 2008.10.30. 선고 2006헌마1098 등 결정 참조.

이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분할연금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제도간의 시간적 선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사자는 먼저 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심판을 받은 후에 분할연금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분할연금청구를 한 후에야 재산분할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의 내용에 따라 연금의 분할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분할연금 지급청구 전에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¹⁶⁾가 먼저 제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법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재산분할청구에 앞서 분할연금청구를 해 분할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비로소 연금분할에 관한 재산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이 있었던 경우는 어떠한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이 경우에도 일단 재산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위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연금분할비율 별도 결정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새로운 분할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위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그 사이에 분할연금수급권자가 균등한 비율로 수령해 왔던 분할연금과 별도로 결정된 분할비율에 따른 분할연금액 사이의 차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가. 현재의 법리상으로는 부정하는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¹⁷⁾, 뒤늦게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심판이 있었다고 하여 분할연금수급권자가 그 동안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수령해 왔던 분할연금이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분할연금수급권자가 그 동안 수령해 온 분할연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심판을 할 필요가 있다.

분할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 뒤늦게 그 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미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17) 대법원 1999.4.9. 선고 98다58016 판결.

도과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 때 배우자였던 자는 더 이상 혼인관계의 실제 존속기간이나 분할비율을 다룰 수 없으므로, 무조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전체에 관하여 균등액을 배분해 주어야 한다. 사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진정한 위헌성은 바로 이 부분,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로도 이를 교정할 방법이 없게 된 때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할연금 청구 전에 무조건 재산분할절차가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건으로는 후자를 지지한다. 이혼 후 장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분할연금청구가 있는 경우에 다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clean-break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제척기간 내에 얼마든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구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노령연금감액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연금분할 비율에 대한 가사소송이 경합하게 되어 판결 간에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금분할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사건에서 먼저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절차가 선행되도록 하고, 재산분할협의를 또는 심판정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분할연금청구를 위해 재산분할절차를 먼저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이미 법원에 의해 실질적 혼인기간과 이를 반영한 적절한 분할비율이 산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진술서 등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둘째, 분할연금 청구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질적 존속기간을 둘러싼 다툼이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시 다룰 이유가 없어진다. 셋째, 실질적 혼인기간이 재산분할절차와 분할연금 지급 절차에서 중복하여 고려될 가능성이 배제된다. 넷째,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당사자가 실질적 혼인기간에 관해 다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 스웨덴도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법률의 규정에 앞세우고 있다.¹⁸⁾

물론 미리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특히 분할연금청구권의

18) 독일과 스웨덴에 관해서는 이정우(2003), 77, 81면; 영국에 관해서는 홍남희(2015), 318-321면; 미국에 관해서는 閔裕淑, “財産分割 對象이 되는 財産의 確定에 관한 몇 가지 問題點 -比較法的 考察을 中心으로-”, 법조 제534호(2001), 107-120면; 차선자, “이혼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2012), 224-231면 참조.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가능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분할연금청구권 자체가 본질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유무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그간 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결과 「국민연금법」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공법적 청구권으로 구성해 왔을 뿐이라는 점, 하지만 이제 판례변경에 의해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64조는 그 사명을 다하였다는 점 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그 제한이 과도하다고도 할 수 없다. 물론 이미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당사자들을 위한 부칙 규정은 따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거나, 전국민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금 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해 이혼 후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함께 제안한다.

| 현 행 | 개정안 |
|--|--|
| <p>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p> | <p>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u>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제64조의2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u></p> |
| <p>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p>국민연금법 제64조의2(재산분할청구와의 관계) ①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u>미리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 분할비율 그 밖에 연금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u></p> <p>②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연금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IV. 입법론(2): 통합법률 제정의 관점에서

1. 통합법률 제정의 필요성

가. 개별법령의 현황

장래의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한 두 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분할연금 청구에 관한 근거규정들이 각종의 개별법령에 신설되었다. 그 요건 자체는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것으로 동일하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연령이 60세에 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은 65세에 달하였을 것을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¹⁹⁾

분할연금액 역시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점²⁰⁾, 다만,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 점도 동일하다.²¹⁾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가 분할연금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생기거나 고유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 유족연금과 관련하여서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는 점²²⁾ 등도 모두 동일하다.

분할연금의 청구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본래 모든 법이 동일하였으나, 2016.5.29.자 「국민연금법」 개정예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청구권은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법」은 다른 법과 다른 두 가지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분할연금 신청구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도이다. 먼저 분할연금 신청구 제도는 분할연금 청구권자가 분할연

19)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준용,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0 제1항 제3호 참조.

20)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준용,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0 제2항 참조.

21)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의 준용,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1 참조.

22) 「국민연금법」 제65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의 준용,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2 참조.

금 수급연령(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분할연금의 지급은 60세에 달하여야 가능하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다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제도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포기를 신청한 날부터 그의 배우자가 분할연금 발생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4).

한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23), 형벌 등의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분할연금도 감액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24)에서 특수성이 있다.

나. 차별의 문제

이와 같이 분할연금제도가 각 개별법령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은 각 직역별 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익이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불편과 불평등을 야기한다. 공무원인 국민과 일반 국민이 이혼한 경우에 공무원인 배우자는 요건 충족 후 5년 안에만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되는데 반해 일반인인 배우자는 3년 안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한다거나, 공무원인 배우자는 분할연금 신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일반인인 배우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모든 종류의 연금에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군인연금법」에는 아직 연금분할과 관련된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25) 그 결과 군인과 혼인한 일반 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군인연금지급기관을 상대로 직접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의 심판에 따라 전배우자를 상대로 그가 지급받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다시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퇴직 연금을 수령한 배우자가 그 분할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어려움에 봉착한다.

23)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 제6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의 준용,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2 제6항 참조.

2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5 제1항 단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2 제1항 참조.

25) 2012. 11. 23. 유승희 의원은 군인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을 대표발의하였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P2D1B1D2V3I1I6H1A7M5M6N9Z5C5 참조 (최종방문일자 2017.2.4.).

퇴직연금 자체는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도 연금분할을 인정하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과 혼인한 일반 국민은 이혼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연금을 손쉽게 분할받을 수 있는 반면, 그의 배우자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은, 저액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손쉽게 분할받을 수 있으나, 정작 배우자였던 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초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고액의 퇴직연금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별도로 분할심판을 받은 경우에만 분할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지역별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다. 중복의 문제

동일한 내용이 각 개별법령에 중복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 중 하나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관계법령이 모두 따로따로 개정되어야 하는 번잡함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금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작업이 대표적이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민연금법」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존속을 연금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므로, 위 각 법률의 개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할연금 신청구 제도나 분할연금 포기제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아직은 「국민연금법」에 한해 도입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 제도의 필요성이나 실익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관계법령에도 마땅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 관련 법령이 모두 흩어져 있는 결과 필요한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당해 제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모든 유형의 공적·사적 연금의 분할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을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독일 역시 종래 「민법」, 「연금청산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및 「연금청산 영역에 관한 계속적 조치에 대한 법률(Gesetz über weitere Massnahmen auf dem Gebiet

des Versorgungsausgleichs)」에 흠어져 있던 연금분할 관련 조문들을 통합하여 2009년 「연금청산의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Gesetz zur Strukturreform des Versorgungsausgleichs)」을 제정한 바 있다.²⁶⁾

2. 법률 제정의 기본원칙

연금분할에 관한 통합 법률을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본 논문에서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이념이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법률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령연금수급권자와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생활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수급권 양도 방식에 의한 분할 제도 도입

연금분할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연장형으로서 청산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집행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과 판례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다. 특히 「군인연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금이 그러하다. 위 각 법에는 현재 관련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따른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수령 중인 퇴직연금에 대해 정기금 채권 형태의 대상분할을 인정하였을 뿐이며²⁷⁾, 그 밖에 장래의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해 실시한 바 없다.

대법원이 예정하고 있는 정기금 채권 형태의 대상분할(이하 ‘정기금 지급방식’이라고 한다.)은 분할의무자가 분할청구권자에게 연금수령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취하게 되므로, 분할의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할청구권자가 분할의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분할의무자에게 연금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이다. 이 때 분할청구권자는 분할의무자의 연금수급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군인연금과 퇴직급여 채권 모두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집행 불능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기금 채권 형태의 대상분할 외에 재산분할심판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한 현물분할이 가능

26) 독일의 법개정 상황에 대해 자세히는 裴寅九(2011), 246-261면 참조.

27)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함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²⁸⁾

이 때 현물분할방식의 연금분할이란 분할의무자의 연금채권을 분할하여 분할청구권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연금지급주체에게 통지하는 방식의 연금분할을 말한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분할의무자의 연금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할의무자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 쌓아 놓은 가입기간 자체의 분할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독일이나 일본, 캐나다 등도 이와 같은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²⁹⁾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가입기간을 분할하는 방식의 개정안이 발의된바 있다.³⁰⁾ 이는 사실상 가입기간을 credit과 같이 운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진정한 의미의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국민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도 2016년에야 비로소 허용되었으므로, 가입기간의 분할만으로는 현물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직역 연금과의 연계도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득이 이혼과 동시에 분할된 부분의 연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법리를 구성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연금분할을 ‘수급권양도방식’이라고 칭하기로 한다.³¹⁾

수급권양도방식은 분할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채권을 양도받은 분할청구권자는 채무자인 연금지급주체로부터 바로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분할의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급권양도방식에서 지급시기를 이혼과 동시에 할 것인가(즉시지급형), 분할청구권자의 연금수급 자격 연령 도달시점으로 할 것인가(지급유예형)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물분할에 따른 연금분할채무의 이행을 노령연금수급개시 시점으로 미룸으로써 연금분할이 분할청구권자의 노후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8) 필자는 이미 현물분할방식의 연금분할이 필요하며, 그것이 해석론상 가능함을 현소해, “장래의 퇴직급여와 재산분할”, 법학논총 제21집 제2호(2014), 331-336면에서 논증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대법원에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입법론으로 재차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바, 본 논문의 서술이 위 논문의 서술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29) 독일에 관해서는 裴寅九(2011), 246-261면; 일본에 관해서는 洪남희(2015), 314-318면; 캐나다에 관해서는 송재우, “이혼후 연금분할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캐나다의 연금분할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6권1호(2015), 296-297면 참조.

30) 2014. 3. 17. 신경림의원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나, 대안반영폐기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M4F0N3N1G7U1U6N1M9O2T5V1U3F0(최종방문일자 2017.2.6.)

이러한 내용의 개정에 찬성하는 견해로 송재우(2015), 305면 참조.

31) 이러한 방식의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로 洪남희(2015), 328-329면 참조.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정기금으로 지급받을 것인지를 분할청구권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이혼과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적 연금지급주체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아직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에게 정기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급시기를 유예한 경우에 그 유예기한은 오로지 분할청구권자의 연금수급 자격 연령 도달시(60세 또는 65세)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현행법과 같이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연금분할의 본질은 본래 재산분할에 있는 것이며, 지급유예를 통해 부수적으로 당사자 자신의 노후보장을 도모할 뿐인 것이므로, 파생적 수급권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자퇴직급여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퇴직시를 기준으로 지급유예시점을 설정하는 수밖에 없다.

나.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분할제도 도입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급권양도방식의 연금분할이 인정되는 셈이다. 분할청구권자는 분할의무자가 아닌 연금지급주체를 상대로 직접 그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집행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 각 법에 따른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청구권자 자신이 60세에 달하는 때에야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에, 그 성립 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위험은 모두 분할연금청구권자가 부담하게 된다.³²⁾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일시금으로 미리 수령해 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클수록 이러한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여 분할청구권자가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현물분할이나 정기금 채권 형태의 대상분할 외에 일시금 지급 형태의 대상분할 제도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³³⁾

32) 비슷한 이유로 60세에 달해야 비로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의 태도를 비판하는 문헌으로 차선자(2012), “이혼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2012), 240면; 류건식, “이혼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KIRI Weekly 207호, 2012, 5-6면(http://www.kiri.or.kr/pdf/전문자료/KIRI_20121109_2232.pdf); 이정우(2003), 73면.

33) 배우자였던 사람이 일시금으로 받아간 경우에 대비하여 분할일시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2012.11.23. 유승희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바 있으나, 대안반영폐기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A2R1O1M2T3Y1B6C2F3E2X9B4S9D8(최종방문일자:

일시금 지급 형태의 대상분할이란 이혼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분할의무자의 퇴직 시점으로 가정하여 퇴직급여 채권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고, 그 중 분할청구권자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시금으로 분할청구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식을 말한다.³⁴⁾ 자산이 충분한 배우자인 경우에 이혼 종료와 동시에 연금에 대한 청산도 한 번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하 이러한 방식의 연금분할을 ‘일시금지급방식’이라고 칭한다. 이는 분할의무자인 배우자가 연금수급개시일에 달했을 때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분할청구권자 쪽에서도 기여분을 미리 청산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후 재정 계획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배우자에게 이혼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어 당사자가 일시금 지급을 원한다면, 국가가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통합 법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연금분할이 모두 가능한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³⁵⁾ 영국 역시 당사자의 의사와 필요에 따라 연금분할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 분할 관련 법률을 발전시켜왔다(「Welfare Reform and Pension Act 1999」).³⁶⁾

| 유형 | 지급의무자 | 지급시기 | 지급형태 | 활용유형 |
|--------------------|-------|------|------|--|
| 일시금지급방식 | 배우자 | 즉시지급 | 일시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력이 있고, 이혼 이후 사정변경의 위험회피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자율적인 연금수립계획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시점까지 기간이 오래 남은 경우 |
| 정기금지급방식 (즉시지급형) | 배우자 | 즉시지급 | 정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연금지급이 개시되었고, 배우자에게 자발적 이행의사가 있는 경우 •일시금지급방식을 원하지만, 일회에 지급하기에는 자력이 부족한 경우 |

2017.2.6.) 또한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기간 만큼의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2013.12.2. 양승조위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으나, 역시 대안반영폐기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D3S1B2C0T2A1G7Y1C7P4E7Y6K4T0 (최종방문일자: 2017.2.6.)

34) 일시금 지급방식의 연금분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자세히는 현소혜(2014), 336-339면 참조.

35)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분할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로 차선자(2012), 244면.

36) 영국의 입법례에 대해서는 김명숙,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검토-부부공동생활의 실태와 새로운 부의 창출에 대응하여”, 고려법학 제56호(2010), 248-249면; 홍남희(2015), 318-321면 참조.

| 유형 | 지급의무자 | 지급시기 | 지급형태 | 활용유형 |
|--------------------|--------|-------------|------|---|
| 정기금지급방식 (지급유예형) | 배우자 | 수급연령 도달시 | 정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았지만, 배우자에게 자발적 이행의사가 있는 경우 •현재는 배우자에게 자력이 없지만, 향후 재무상황의 개선이 예측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자율적인 연금수립계획이 없는 경우 |
| 수급권양도방식 (즉시지급형) | 연금지급주체 | 즉시지급 | 일시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당사자에게 자율적인 연금수립계획이 있는 경우 |
| 수급권양도방식 (지급유예형) | 연금지급주체 | 수급연령 도달시 | 일시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력이 없고, 자발적 이행의사도 없는 경우 •당사자가 몫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 |
| | | | 정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력이 없고, 자발적 이행의사도 없는 경우 •당사자에게 자율적인 연금수립계획이 없는 경우 |

다. 통지 제도의 마련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쟁점은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권양도방식을 택하면서도 당사자 스스로 연금분할을 자신의 노후대책으로 삼기를 위해 지급유예형으로 이를 선택한 경우에 당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분할청구권자는 이혼 성립 후 발생하는 다양한 사정변경에 의해 자신의 분할연금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이 좌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비해 일시금 지급방식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³⁷⁾

현행 「국민연금법」 등은 분할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즉 분할연금청구권자가 스스로 60세에 달해 그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는 충분하지 않다. 분할의무자 측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때 분할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분할청구권자 측은 일시금 지급방식을 고집하면서 자력이 없는

37) 같은 취지로 차선자(2012), 244-245면.

분할의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해 퇴직이나 조기 수령, 대출 등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분할의무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일단 수급권양도방식을 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사실을 연금지급주체에게 통지하고, 연금지급주체가 통지를 받거나 수급권양도를 승낙한 때 이후에 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정으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사정변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청구권 보전을 위한 특칙 신설

정기금 지급방식에서 지급유예형을 택한 당사자의 보호도 문제이다. 선택 당시에는 배우자에게 자발적 이행의사가 있어 수급권양도방식을 택하지 않았지만, 그 후 배우자였던 자가 변심하여 이행을 거부할 기세를 보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문제이다. 연금분할을 위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준비 중이거나 혹은 심리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해 버리거나 퇴직연금을 중간정산받는 경우에 당사자는 어떠한 종류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법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각종의 가압류·가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까지 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연금일 때에는 양도 금지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떠한 방식의 연금분할방식을 택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부부 상호 간에는 각종 수급권에 대한 양도금지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다. 상호간에 연금수급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적어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 배우자가 수령하고 있거나 장래 수령할 수급권에 관하여 양도 및 압류 금지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례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³⁸⁾ 연금 수급권은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공법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는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각종의 연금 관련 개별 법령이 압류금지 조문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³⁹⁾ 하지만 동일한 연금수

38) 2016.6.13. 김삼회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위원회 계류 중이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C6Z0G6V1N3L1W3F4R0J5L4U8Y2Z2 (최종방문일자: 2017.2.6.)

39) 헌법재판소 2000.3.30. 선고 89헌마401 등 결정: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

급권이라도 부부 상호간에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일 뿐이다. 연금은 이를 직접 수령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가구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한 이상, 그 이익을 함께 향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는 압류금지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이것이 공적 연금수급권의 상속까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 기타

현행법에 따른 연금분할 제도는 모두 법률혼이 해소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분할의 본질은 재산분할이며,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통합 법률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연금분할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⁴⁰⁾ 그 밖에 당사자에 의한 재산분할의 협의나 법원에 의한 심판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연금분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이혼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2년의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II.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3. 법률안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연금 등 분할에 관한 법률’의 대강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 공무원 연금제도의 목적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서는 수급권자가 실제로 직접 그 이익을 받아야 하며, 타인이 그 이익을 받는 것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보장법률들을 거의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그 양도나 담보제공 등의 사적 처분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40) 일본의 후생연금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역시 사실혼 해소시 연금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홍남희(2015), 317면 참조. 2016.6.13. 김삼화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C6Z0G6V1N3L1W3F4R0J5L4U8Y2Z2(최종방문일자: 2017.2.6.)

가칭 「연금 등 분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이혼시 연금 등 분할 제도를 마련하여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연금 기타 급여의 공평한 청산을 도모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란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제3조에서 정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제3조에서 정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4. “수급자”란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지급주체”란 「국민연금법」 제50조, 「공무원연금법」 제26조, 「군인연금법」 제10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별정우체국법」 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제3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를 말한다.
6. “가입기간 등”이란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가입기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별정우체국법」 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연금법」 제49조 제1호에 따른 노령연금
2.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
3. 「군인연금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
5. 「별정우체국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제4조(연금 등 분할청구권) ① 이혼한 자의 일방(이하 ‘분할청구권자’라고 한다.)은 다른 일방(이하 ‘분할의무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급권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협의를 의한 연금 등 분할) 연금 등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제6조(심판에 의한 연금 등 분할) 연금 등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이혼 당시 급여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7조(연금 등 분할의 방법)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연금 등 분할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방법에 따른다.

1. 일시금지급방식
2. 정기금지급방식
3. 수급권양도방식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금지급방식으로 연금을 분할할 때에는 분할의무자가 장래 매월 지급 받을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청구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제8조(분할 대상 가액의 산정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지급방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금지급방식으로 수급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수급권의 가액은 협의이혼 성립 당시 또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즉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상당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9조(압류 등에 관한 특칙) 분할청구권자는 「국민연금법」 제58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별정우체국법」 제31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수급권양도방식에 관한 특칙) 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급권양도방식으로 수급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정해진 분할의 액수 또는 비율을 지급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급주체는 분할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해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액수 또는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분할청구권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분할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대신 새롭게 임의가입한 국민연금 또는 이미 가입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연계신청의 시기, 절차, 효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급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이후에 발생한 분할의무자의 사망, 장애 그 밖의 사정으로 분할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급주체가 수급권양도방식에 의한 수급권 분할을 승낙한 경우에도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이 있었던 경우 지급주체는 분할의무자의 급여액을 결정함에 있어 분할청구권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분할청구권자의 신청 및 지급주체의 지급 시기, 방법 그 밖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금 등 분할청구권의 소멸) 연금 등 분할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대상 결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법」의 개정 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로 각종의 연금 분할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본 토론문의 주된 관심은 주로 현행법상의 획일적인 법정연금분할 제도에 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유연한 연금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되,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연금분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과 생활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있다.

물론 본 토론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주제도 여럿 남아 있다. 연금분할 청구권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액수의 정교한 산정방법이나 연금분할사건을 재산분할사건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 문제⁴¹⁾와 같은 작은 문제부터 혼인 중 재산분할제도의 도입과 연계되어 있는 혼인 중 연금분할 제도의 도입⁴²⁾, 진정한 의미의 현물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소득점수 제도로의 개편 문제, 이혼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 비양육친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양육친의 지위에서 유족연금을 받아 양육비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연금 제도의 도입⁴³⁾, 연금분할이 양쪽 당사자를 모두 노령빈곤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국민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연금분할은 공법과 사법, 양쪽 모두의 영역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본 토론문 역시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의 해결책을 제시해 본 것에 불과하다. 향후 해당 주제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쌓여 당사자들의 권리가 보다 간이하고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볼 뿐이다.

41) 현재는 연금분할이 재산분할사건의 일부로 함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만 개별적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다.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므718 판결은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진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 가족법연구 제28권 3호(2014), 406-407면.

42)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문헌으로 송재우(2015), 306면 참조.

43) 양육연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정우(2003), 77-78면 참조. 차선자(2012), 249면은 양육연금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헌법재판연구원, 2014

2. 논문

김명숙,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검토-부부공동생활의 실태와 새로운 부의 창출에 대응하
여”, 고려법학 제56호(2010)

김태진,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소고-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문제점 및 개
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2016)

류건식, “이혼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KIRI Weekly 207호(2012)

閔裕淑, “財産分割 對象이 되는 財産의 確定에 관한 몇 가지 問題點-比較法的 考察을
中心으로-”, 법조 제534호(2001)

裴寅九,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검토-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0집(2011)

송재우, “이혼후 연금분할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캐나다의 연금분할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6권1호(2015)

이정우,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9권2호(2003)

이지은, “이혼시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 민사법학 제70호(2015)

이진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 가족법연구 제28권 3호(2014)

차선자, “이혼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2012)

최문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사회과학연구 제26권 2호(2010)

현소혜, “장래의 퇴직급여와 재산분할”, 법학논총 제21집 제2호(2014)

홍남희, “이혼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49집(2015)

국민연금 분할연금 토론문

양소영_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변호사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정우_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정우_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분할연금제도의 필요성/목적

- 부부가 이혼 시 과거 혼인기간 동안 가정의 유지를 위해 수행하였던 모든 형태의 소득활동과 비소득활동에 대하여 동등한 법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취지를 연금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임.
 - 연금의 분할에 있어서 동등성(equivalence)이란 절대적 또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는 가정의 유지를 위한 충실성과 개인적 노력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하지만 이러한 충실성이나 개인적 노력 등은 주관적 판단기준으로서, 이혼 시 연금을 분할하게 될 할 경우 분할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가사 및 돌봄노동 등 비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보장의 공백문제를 겪게 됨.
 - 따라서 분할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에 있어서 비소득활동 또는 저임금 근로계층이 이혼 시 겪게 될 수 있는 불리문제를 사회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하지만 이러한 취지의 분할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연금제도가 미성숙한 국가의 경우 자칫 이혼에 따른 노후빈곤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임.

2. 분할연금제도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

- 사회보장권 vs. 재산권 논쟁

- 일반적으로 연금소득 = Earned Income(수지상등의 원리 또는 소득의 시기적 재분배: 재산권) + 재분배(소득의 개인간 또는 세대간 재분배)로 구성되며, 이 경우 연금소득은 그 자체로서 사회보장권의 특성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음.
- 위의 식에서 소득의 시기적 재분배, 개인간 재분배 그리고 세대간 재분배는 국가가 사회정책적 목표의 달성이나 사회질서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따라서 법률체계 상으로 볼 때 재산권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독립적 수급권 vs. 파생적 수급권의 논쟁

- 일반적인 추세를 볼 때 공적연금제도는 파생적 수급권보다 독립적 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연금분할제도에서도 해당될 수 있음.
- 일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분할연금 수급자가 재혼 시 연금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던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비록 이와 같은 규정은 2007년 법률 개정에서 폐지되었으나, 그와 유사한 전근대적 제도의 잔재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례로서 ‘연금의 사후적 분할’ 규정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임.

- 같음 vs. 다름의 논쟁

- 분할연금의 수급자/의무자의 성별 분포, 노후빈곤의 여성화 등을 반영하여 연금분할제도의 운영방식 그리고 개혁방안 등이 점차 gender의 차원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음.
- 일례로 분할연금제도는 남성에 대비한 여성의 상대적 불리, 즉 다름을 부각시켜 특례규정의 마련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 아니면, 양성평등의 관점, 즉 같음의 차원에서 현행의 분할연금제도를 가급적 성중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 이상과 같은 대립적 견해 사이에서 분할연금제도는 가급적 gender의 차원을 초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분할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 국가별로 분할연금제도는 연금정책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음.
- 스웨덴: ①노후소득보장이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로서, ②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NDC방식의 Income Pension, ③적립방식의 Premium Pension 그리고 ④부과방식의 Guarantee Pension 중 ⑤ Premium Pension에서 개인의 자발적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⑥Income Pension과 Guarantee Pension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됨.
- 독일, 프랑스: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각종 지역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분할연금이 운영되고 있음.
- 스위스: ①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에서와 같이 스위스의 연금급여산식은 A+B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별 연금급여는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최저연금의 2배) 사이에서 지급됨. 그리고 ②최저연금까지의 소득은 모든 노인들에게 기여경력에 상관없이 보장되며, ③연금개혁 이전까지 연금수급자(남성)의 배우자에게는 아내연금이 50%의 수준으로 추가로 제공되었음. ④2001년 연금개혁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인 1연금’의 원칙이 도입되었음. ⑤이에 따라 이혼 시 연금의 분할은 균등부분인 A는 부부 각자에게 그리고 소득비례부분인 B는 부부가 각자 반분하는 방식, 즉 $(A + 1/2B)$ 으로 이루어지게 됨. ⑥스위스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의 분할(사후적 현금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네덜란드: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의 부담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면에 각자의 연금액은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됨. 이상과 같은 독특한 원리에 따라 네덜란드의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의 분할 자체가 필요 없음.

4.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개선의 대표 논점: 이혼과 동시에 연금의 즉시분할

- 연금의 사후적 분할의 문제점
 - 수급권의 불확실성: 연금분할의 책임자가 장애 또는 사망 시 청구권의 미발생 문제
→ 이혼한 배우자에게 종속성의 문제
 - 이혼 이후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자신의 분할연금과 독자적인 연금경력을 합산하여 노후-장애-사망 등과 같은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
- 연금의 즉시분할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A값
- 개선방안
 -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A값을 제외시키고, 전적으로 B값만으로 운영
 - 연금포인트방식으로 전환
 - A값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여 모두에게 A값을 동등하게 제공: 스위스의 1인 1연금의 원칙

국민연금 분할연금 토론문

김현주_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팀장



